

[별표 9] <신설 2010.2.18>

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
범위 (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)

구미시, 김해시, 마산시, 아산시, 원주시, 익산시, 전주시, 제주시, 진주시, 창원시, 천안시, 청주시, 춘천시, 충주시, 포항시, 당진군, 음성군, 진천군, 홍천군(내면은 제외)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